

# 관리 규정

##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제정	1987년 12월 01일	대한낙하산협회
개정	1995년 06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7년 01월 12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8년 01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8년 04월 10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9년 07월 04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0년 01월 06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0년 10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2년 10월 16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7년 07월 27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0년 05월 20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0년 07월 20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0년 09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0년 11월 20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2년 02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2년 08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2년 12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4년 08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5년 01월 10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6년 04월 2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9년 01월 07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26년 01월 10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 1. 목적

본 규정은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운영과 업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확실히 하고, 협회의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입회절차

**3.1** 본 협회는 만 16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입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어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 **3.2** 입회서류

**3.2.1**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협회입회양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입회신청서(본인서명)
- 나. 책임면제증명서(본인서명)
- 다. 입회 전 고지의무 사항(본인서명)
- 라. 사진 2매(3\*4)

**3.2.2** 외국인이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협회 영 문입회양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입회신청서(본인서명)
- 나. 책임면제증명서(본인서명)
- 다. 입회 전 고지의무 사항(본인서명)
- 라. 사진 2매(3\*4)

**3.3** 입회가 승인된 자는 입회비와 회원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 을 가진다.

# **4. 회 비**

**4.1** 회비는 입회비 및 회원회비로 구분한다.

**4.2** 회원은 회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4.3** 회원의 입회비는 10(십)만원이다.

**4.4** 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4.4.1** 회원의 12개월 회비는 20(이십)만원으로 한다.
- 4.4.2** 평생회원의 회비는 200(이백)만원으로 한다.
- 4.4.3** 90일 미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임시회원 회비는 8(팔)만원으로 한다.

**4.5** 회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회원회비를 납부 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상실된 기간의 회비는 소급 납부하지 않는다.

**4.6** 회원회비는 매년 1월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규 가입회원은 가입일 기준으로 1년간 연회비가 유효하며, 그 다음 해에는 잔여월의 회비를 납부한다.

**4.7** 입회비와 회원회비는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심의회는 이사회에서 한다.

새로 조정된 회비는 회원의 회비가 만료 되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4.8 납부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5. 회원증과 자격증

5.1 회원증 발급 비용은 3만원으로 한다.

5.2 자격증은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강하자 지침서의 자격증발급규정에 준한 자격자가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자격자에게 회장이 발급한다.

5.3 해외에서 취득한 FAI 회원국의 강하자격증,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증은 인정되며, 협회에서 발행하는 해당자격증으로 전환발급 받아야 한다.

5.3.1 해외에서 취득한 FAI 회원국의 강하자격증을 협회발행 자격증으로 전환시 강하자격증 신청서에 본 회에서 승인받은 교육기관의 교관 확인을 받아 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5.3.2 해외에서 취득한 FAI 회원국의 해당 교관자격증을 협회 발행 자격증으로 전환시 본 협회 해당종목 시험관의 실기평가 2회를 통과해야 한다.

5.3.3 해외에서 취득한 FAI 회원국의 낙하산정비사자격증을 협회발행 자격증으로 전환시 관련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은 해당분과의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5.4 회원증 번호는 입회 순으로 하며 회원자격을 상실하여도 고유번호는 소멸되지 않는다.

5.5 강하자격증 번호는 취득 순으로 하며 활동하지 않아도 고유번호는 소멸되지 않는다.

5.6 교관과 낙하산정비사 자격증은 매년 갱신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5.7 자격증의 발급 및 갱신료

5.7.1 강하자격증,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자격증의 신규 및 전환발급료는 2(이)만원이다.

5.7.2 상위의 강하자격증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증의 취득시의 발급료는 2(이)만원이다.

5.7.3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자격증의 갱신료는 2(이)만원이다.

5.7.4 자격증 발급 비용은 유효회원에 한하여 2(이)만원의 재발급료를 받아 발급한다.

5.7.5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료는 2(이)만원으로 한다.

5.7.6 회원증 분실 시 재발급료는 2(이)만원으로 한다.

5.7.7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갱신료의 합계는 2(이)만원이다.

5.7.8 교관 및 낙하산 정비사 자격증의 자격 유지 비용은 연 10(십)만원으로 한다.

## 6. 지부회

6.1 본회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직할시, 광역시, 각 도에 지부 회를 둘 수 있다.

**6.2**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외에도 지부 회를 둘 수 있다.

**6.3** 지부장은 협회 사무국의 지침을 받아 활동 하여야 하며, 업무계획과 실적은 활동 직후에 사무국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본회의 활동방침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지부회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 실적이 부진한 지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폐쇄한다.

**6.5** 폐쇄 결정이 된 지역의 지부장은 폐쇄의 결정과 함께 모든 직위를 상실한다.

## 7. 교육과 세미나

**7.1** 협회가 승인한 교육기관은 반드시 본회가 승인하는 교관을 임명하여 훈련이나 세미나를 실시한다.

**7.2** 교육기관의 설립 신청은 협회의 스카이다이빙 교육기관 설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훈련안전위원회에서 실무심사하고,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 결정한다.

**7.3** 교육의 내용은 교육기관의 교범에 의한다.

**7.4** 교육기관은 협회의 정관, 관리 규정, 강하자 지침서 및 낙하산 정비사 관리규정 및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생의 안전을 책임 져야 한다.

**7.5** 기술 강좌, 신기록 시도 등의 행사를 주관하려는 자는 D급 이상의 강하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사전에 행사 주관에 대한 계획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훈련안전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8. 스카이다이빙 교육기관 설립요건

**8.1** 설립 주최자는 협회의 유효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2** 교육기관은 강하자 지침서의 교육방법에 의한 관련 교관 2인 이상의 교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8.3** 교육기관은 신입교육생에게 교육중 협회소개 및 제 규정을 고지하고, 교육강하 이전에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8.4** 교육기관은 신입교육생이 입교시 스카이다이빙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8.5 교육생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결정한다.

8.6 교육기관의 교관은 협회 교관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8.7 교육기관은 사업체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7.1 교육기관은 항공법에 명시되어 있는 레저사업 등록 업체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8.7.2 레저사업 등록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의 경우, 협회 교육기관 설립 인가를 불허하며 국내 및 해외 활동을 규제 한다.

8.8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8.8.1 교육기관 설립 신청서

8.8.2 교관 현황

8.8.3 교육생 장비보유 현황

8.8.4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8.8.5 서약서

8.8.6 사업자등록증

8.8.7 실내교육장 평면도

8.8.8 교육기관 약도

## 9. 강하활동

9.1 본회는 강하를 주관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행정적인 업무만 지원한다. 다만 대회, 시범강하 및 제9.2항에 의한 강하가 중지 또는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훈련안전국이 강하를 주관할 수 있다.

9.2 본회의 강하주관은 교육기관 및 유효회원인 D급 강하자격증 소지자가 주관이 되어 할 수 있다.(이하 “강하주관자” 라 칭한다)

9.2.1 교육기관은 교육생, 초심자, 2인승강하, 개발 중인 낙하산의 테스트강하 및 숙달강하등 일체의 강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8조 규정으로 별도의 강하주관신청 및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9.2.2 D등급 이상의 강하자가 주관이 되어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강하는 스카이다이빙 입문 교육생 및 초심자를 위한 강하를 제외한 일체의 강하를 실시할 수 있다.

9.2.3 D급 이상의 강하자격자가 주관이 되어 강하를 실시 할 경우는 강하주관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을 협회가 결정할 수 있다.

9.3 본회의 회원및 강하주관자는 국내에서 9.2항 및 9.2.3항 에 의한 승인된 강하를 해야 한다.

9.4 강하자는 강하주관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9.5 강하자는 자신의 강하기록부를 강하주관자가 요구 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9.6 강하자는 자신의 예비낙하산포장 이력서를 강하주관자가 요구 시 확인 시켜 주어야 하며, 예비낙하산은 정

비사 관리규정에 따른다. 만일, 무자격자에게 예비낙하산을 포장한 후 강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강하자 및 포장을 해준 회원을 제14.2항에 따라 징계한다.

**9.7** 강하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하주관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 할 의무가 있다.

**9.8** 강하주관자는 강하 활동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9.9** 본 회 회원들에게 스카이다이빙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9.9.1 시범강하 참가자, 대회 참가선수, 특수한 강하를 하는 회원들은 스카이다이빙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10** 강하비는 강하주관자가 결정한다.

**9.11** 강하주관자는 강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협회로 전가할 수 없다.

## 10. 국가 대표

**10.1** 차년의 국제 대회 선발전을 전년도에 실시한다.

**10.2** 4-way FS 종목의 경우, 선발전의 우승한 팀은 선발전의 인원으로 카메라맨을 제외한 최소 3명 이상의 선수로 구성하여 국제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10.3** 만일, 선발전의 인원으로 3명 이상이 구성되지 못하면, 2위 팀에게 국제 대회 참가권이 주어진다.

**10.4** 만일, 2위 팀도 선발전의 인원으로 3명 이상이 구성되지 못하면, 훈련안전위원회에서 참가선수단을 선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10.5**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장이나 선수는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대회 유치 등의 발언을 할 수 없다.

**10.6** 선수단장은 대회 종료 후 귀국하여 협회 이사회에 귀국 보고를 해야 한다.

**10.7**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은 매일 경기 보고 일지를 작성해야하며, 귀국 15일 이내에 대회 참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0.8** 국가대표로 선발된 회원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0.9**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국제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국익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면 안 된다.

- 10.10 국가대표로서의 자세나 임무를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0.11 국가 대표선수단의 팀이나 개인은, 해당국의 법규와 사회적인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
- 10.12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임원, 참관인 등은 선수단장의 통솔에 따라야 한다.

## 11. 시범강하

- 11.1 행사 시범강하의 접수 및 계약은 사무국, 교육기관 및 D급 강하자격자가 주관이 되어 할 수 있다
- 11.2 시범 강하자는 결격사항이 없는 회원으로써, C급 이상의 강하자격자로 선발하고, 시범행사장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기능과 수준이 시범강하를 하기에 적합한 인원을 계약주체가 선발하여 본회 사무국에 행사 시범강하주관 신청서를 제출하며 훈련안전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11.3 시범강하를 주관하는 계약당사자는 협회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시범강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지며, 그 책임을 협회로 전가할 수 없다.

## 12. 2인승 강하

- 12.1 2인승 강하는 만16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강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어 강하 신청을 할 수 있다.
- 12.2 2인승 강하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 서명한 2인승 강하 신청서를 강하주관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2.4 2인승 강하비는 강하주관자가 결정한다.

## 13. 활동, 사업과 책임

- 13.1 협회의 활동과 사업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된다.

## 14. 회원 포상 및 징계

- 14.1** 협회의 모범이 되는 회원에게는 포상을 하며 대상자와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14.2** 본회의 규정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심각히 위반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게는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회원자격정지, 보유자격 정지 및 박탈, 회원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 15. 부칙

- 15.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의 의결에 따른다.
- 15.2** 생명출강하 및 교관도움개방강하 교관자격증의 갱신은 자격심의없이 발급한다.
- 15.3** 본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